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873호 2014년 7월 7일(월)

공 고

○ 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..... 2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(신고)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 합니다.

2014년 7월 7일

속 초 시 장

가. 공 고 명 : 건축허가(신고)에 따른 도로지정

나. 도로위치 :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72-2번지

다. 공고기간 : 2014. 7. 07.~7. 22.(15일간)

라. 도로지정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	소유자	건축허가(신고)번호 (건축허가일)	비고
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강원도 속초시 장사동	72-2	대	1,428	43	엄창용	2014-도시디자인과 -건축허가-32 (2014.07.03.)	건축주: 영월엄씨사직종 장친종중

마. 공고방법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

바. 관계도서 : 속초시 도시디자인과 비치(열람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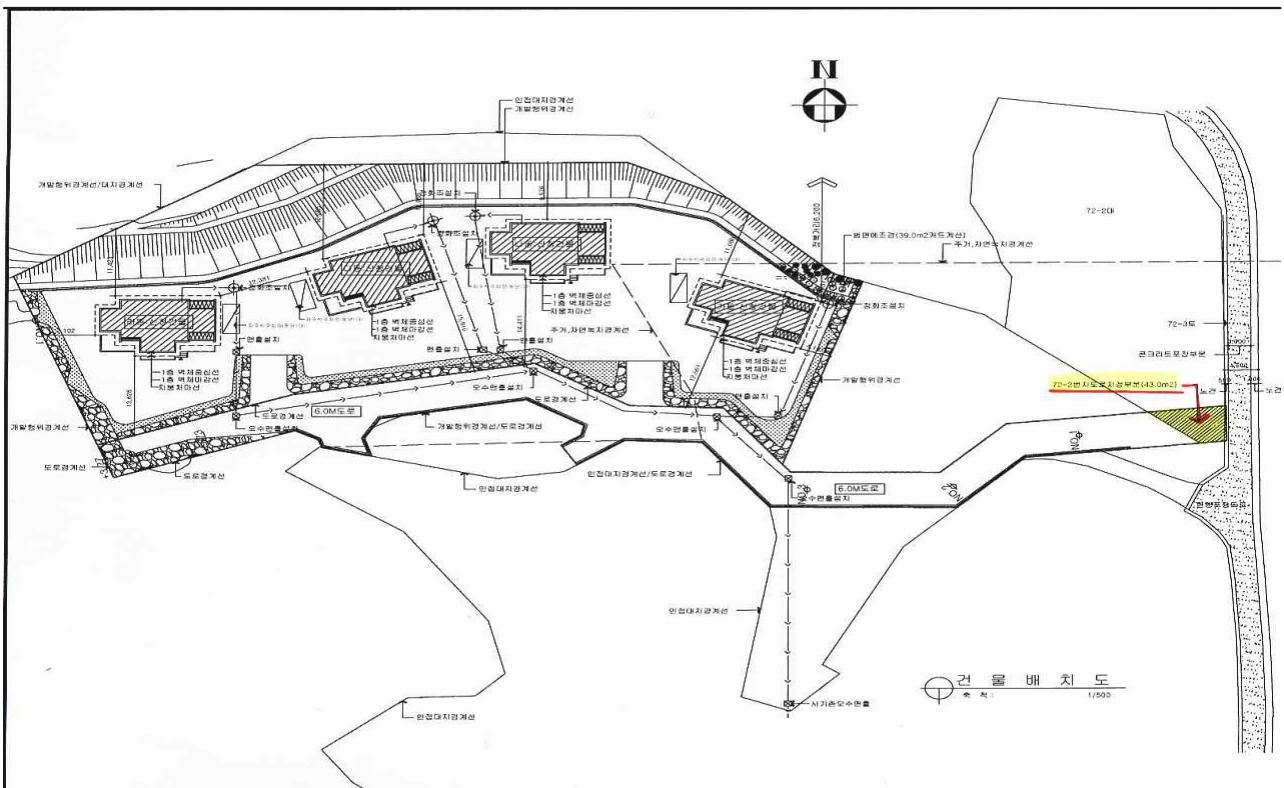
위치도 및 현황도

-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 치 도

축 척 NONE



현 황 도

축 척 NONE